

피고인 의견서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사 건 : 2019고합 4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 우종창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증거조사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가.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피해자 조국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조국에 대하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운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의 모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최고의 수장입니다. 김세운 재판장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1심 판결을 맡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났다? 그

것도 이 시점에서 누가 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무렵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접촉을 가진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의혹 제기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 뿐만 아니라 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이유나 배경 등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한 점,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 중에서 특정 내용만을 발췌한 뒤, 임의로 해석하여 기소한 점,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송 취지와 사뭇 다른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의 발언 취지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의 발언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날은 2018. 3. 2.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태극기 우파 국민들이 3.1운동 99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서울역과 시청 앞, 그리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대규모 태극

기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와 탄핵무효를 외쳤던 그 다음날입니다.

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작성한 방송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방송 총 분량은 39분54초입니다. 맨 첫 부분에서 4분53초까지는 3월 1일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거짓과 진실의 행동지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느냐, 제가 갑자기 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거짓과 진실을 애청하는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에게 많은 사실들을 제보를 하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라는 내용입니다.

다.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은 방송 시작 후 4분53초에서 시작하여 8분45초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 제보 내용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사실로써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세윤 재판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의 얼굴은 이미 TV나 신문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서 말씀드렸지만 제보자의 주장이고 아직 제가 사실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월에서 2월초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최서원 피고인의 1심 판결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하 생략).”

라. 피고인이 방송에서 언급했던 발언의 취지는 ① 제보를 받았다는 것, ②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 ③ 그 자리에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동석했다는 것, ④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월에서 2월초 사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발언 중에서 전체 맥락은 무시하고, ②항과 ④항의 전제 사실을 배제한 부분만을 범죄사실로 기재하여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마. 이어지는 8분45초에서 11분51초 사이의 방송 내용은 피고인이 제보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이고, 11분51초 이후에는 피고인이 제보 받은 또 다른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 피고인은 위 방송에서 제보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에게 사실여부를 의뢰하는 질문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김의겸 대변인에게 이 방송을 하기 전인 2018년 3월 1일 오후 6시 전까지 답신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후 7시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다음, 그 한식집에서 서빙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들이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 제보 내용을 방송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이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은,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이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에 만났다는 것, 만난 장소가 청와대 부근의 한식집이라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 최강욱 변호사가 동석했다는 것입니다.

나. 이처럼 제보 내용은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는 그 당시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최강욱 변호사의 이름을 거론하였습니다. 이는 제보자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최강욱 변호사는 1994. 제11회 군법무관 임용 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으로, 2005.부터 13년 동안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8. 9. 7.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면서 언론에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피고인도 이 방송을 했던 2018. 3. 1. 무렵에는 최강욱이라는 변호사의 존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라. 피고인은 그러나 방송 직후인 2018. 3. 5. 김세윤 판사에게 보낸 취재협조문 제7항에 최강욱 변호사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김세윤 재판장은 서울대 법대 동문인 최강욱 변호사와 친밀한 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하며 최강욱 변호사와의 관계를 질의한바 있습니다.

마.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식사할 때, 그 자리에 최강욱 변호사가 동석했다는 제보 내용입니다. 이는 제보자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인데다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때문에 피고인은 제보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기 위하여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방송했던 것입니다.

바. 피고인은 2020. 3. 4.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제보자의 신원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밝힌바 있습니다. 제보자는 피고인이 2017. 10. 경부터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후부터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한 애독자 중의 한 명입니다. 제보자는 피고인이 진행한 방송 내용과 관련해 자기의 의견을 전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모르는 법률적 지식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사. 제보자는 피고인이 2018. 7.경부터 「파란장미 뱃지」 달기 캠페인을 시작하자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파란장미」의 원래 꽃말은 ‘불가능’이었으나, 일본 산토리사가 유전자 교합을 통해 파란장미를 탄생시키면서, ‘기적과 희망과 번영’의 상징으로 꽃말이 바뀌었습니다. 피고인이 주도한 「파란장미 뱃지」 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염원

하는 국민운동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운동을 널리 알리겠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파란장미 뱃지」 200개를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보자의 부인이 이화여대 출신이어서 이화여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뱃지 달기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제보자는 70대의 어르신이며, 성은 「남」 씨입니다.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세상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제보자의 과거 경력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럴 때마다 제보자는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하였습니다.

자. 제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같이 법률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피고인은 제보자가 젊은 시절 법조계에 몸담았던 공직자로서,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도 가 본 적이 있는 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4. 취재원 보호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은 조선일보에서 23년간 근무한 전직 기자이면서, 「거짓과 진실」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기자는 취재원, 즉 제보자가 없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자에게 있어서 취재원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 기자로서 시청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진실

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을 정확히 밝혀야 하는 것이 언론인의 정
도라고 알고 있지만, 취재원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공개
하지 말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재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
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제보자의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오프 더 레
코드」를 전제로 취재에 응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미국의 경우,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방패법」(shield law)이 있는데,
취재원 보호는 법원의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연방 「방패법」의 핵심
취지는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피해 또는 즉각적인 죽음(살
인) 또는 심각한 육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취재원
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라. 이 사건도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
고 실제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
시어 피고인이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정을 헤량해 주시기 바랍
니다.

**5.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방송하
지 않았습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인 2017. 10. 2.부터 「거짓
과 진실」이라는 개인 유튜브를 개설하고,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주제로 1주일에 두 번 혹은 세 번씩 방송을 해왔습니다. 방송
내용은 모두 유튜브에 저장돼 있으며, 첨부한 자료는 피고인이 2017.

10. 2.부터 2020. 4. 26.까지 방송한 내용의 제목들입니다. (첨부 자료 1).

나. 위 첨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행 과정을 검찰 수사기록과 법정녹취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예를 들면 TV조선 이진동 기자,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K스포츠재단 사업부장 노승일)이 쓴 책 내용과 피고인이 사건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시청자들에게 소개 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전에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보도한,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 제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3편(2017. 10. 12.); 추가 영장 발부는 위법이라는 판례 찾았다
- ② 19편(2017. 11. 25.); 대통령 진의를 왜곡한 검찰조서의 문제점!
- ③ 28편(2017. 12. 17.); 최서원 결심 공판/검찰은 뜨덤뜨덤... 변호인은 논리 정연
- ④ 29편(2017. 12. 19.); 안종범 업무수첩 56권의 미스터리와 김세운 재판장의 날카로운 추궁
- ⑤ 37편(2018. 1. 10.); 최서원 1심 선고 연기는 得이나 失이나?
- ⑥ 52편(2018. 2. 14.); 박근혜 대통령 중대 결단(?) 가능성!
- ⑦ 53편(2018. 2. 16.); [특별인터뷰] 이경재 변호사/김세운 판사 비판
- ⑧ 54편(2018. 2. 19.); 판결문 첫 문장이 이럴 수가...
- ⑨ 55편(2018. 2. 21.); 판사가 대통령 진술을 배척하다니...
- ⑩ 57편(2018. 2. 25.); 헌법 제84조에 대한 김세운 판사의 기묘한(?)

해석

⑪ 58편(2018. 2. 28.); 삼일절 오후에 거짓과 진실 행동지침 발표

다. 58편 다음의 59편이 이 사건 관련 내용입니다. 이 사건 방송의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그 증거는 기록 속에 있다/ 「거짓과 진실」 행동 지침 공개”입니다. 피고인이 조국 민정수석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훼손하려 했다면 제목을 이처럼 밋밋하게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상의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적은 선정적인 제목을 통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회 수가 늘어나며, 조회 수가 많을수록 인기 있는 유튜브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라. 피고인이 이 방송 제목에 조국 민정수석이나 김세윤 판사의 이름을 넣고,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 부근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저녁을 먹었다고 하였다면, 조회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 방송의 전체 성격을 왜곡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6. 최강욱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조국·최강욱·김세윤 관계에 대하여

가. 최강욱 변호사는 2017. 10. 13. 정봉주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인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바로 날입니다.

나. 위 방송에서 최강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 있게 말했고, 위 방송의 제목도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 2/ 박근혜 구속영장 재 발부,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최강욱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의 서울대 법대 4년 후배이며, 최강욱 변호사가 서울대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지도교수가 조국이었습니다. 최강욱 변호사와 조국 민정수석은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30년 지기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라. 최강욱 변호사와 김세윤 판사는 서울대 법대 86학번으로 동기이며, 사법고시 준비를 같이한 사이였습니다. 김세윤 판사는 이 법정에서 “최강욱 변호사의 아내와도 아는 사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세윤 판사의 현 주거지는 경기도 용인이며, 최강욱 변호사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할 때, 최강욱 변호사가 그 자리에 동석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조국·최강욱 등 주요 증인들의 증언 모순점에 대하여

가. 최강욱 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2019. 4. 12.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경찰에 보낸 진술서에서 “2018년 1~2월경에는 공직을 맡기 전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거나 식사를 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적

으로 진술한 적이 있으며, 2020. 5.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변호인이 재차 확인하자 “틀림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은 2020. 4.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민정수석 시절에 최강욱 변호사와 가끔씩 연락해서 1년에 한 두 번 씩은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변호인이 추궁하자, 최강욱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착각한 것 같다”라고 말한 뒤, “민정수석으로 가고 나서 1년이 넘는 시점에 연락이 와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 적이 한 번 있다”라며 기존의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다. 최강욱 변호사는 본 법정에서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2017. 5.부터 1심이 선고된 2018. 4. 6. 전까지, 김세윤 판사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나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있냐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에 재판장이 누구라고 보도됐을 때, ‘고생하겠다. 힘내라’는 취지의 격려식의 문자는 보냈을 것입니다. 통화는 안 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이 별로 좋은 일도 아니고, 친구지만 변호사나 판사님이 잘 안 받지요”라고 진술하며, 김세윤 판사와의 통화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김세윤 판사는 2020. 4.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변호인이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하여, 최강욱 변호사와 대화한 적이 있냐요”라는 심문에 “대화를 하면서 ‘이번에 그 재판 하고 있냐’ 그런 정도의 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어떤 내용의 대화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변호인이 재차 “대화를 한

적은 있지요”라고 추궁하자,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오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렇게 인사말 정도로 해서 그런 주제의 대화가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마. 위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강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김세윤 판사에게 격려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반면, 김세윤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최강욱 변호사와 ‘요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정도의 대화는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때문에 김세윤 판사와 최강욱 변호사 중 한 명은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입니다.

바. 최강욱 변호사는 본 법정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와의 관계에 대해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이고, 학부 졸업 후엔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며 조교로 근무하였습니다. 김세윤 판사는 서울대 법대 86학번이어서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라는 교정에서 같이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사. 김세윤 판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2019. 3. 14. 오전 10시14분 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소속 양방원 수사관과 전화 통화할 때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세윤 판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저희 대학교 동기들도 조국 교수가 서울대 법대 선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알게 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김세윤 증인에게 조국 수석과의 관계를 물은 뒤, “대학교 재학 중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냐”라고 질문하자, 김세윤 판사는 “제가 그것을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주 뵈을 수도 있고…”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자.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최강욱 변호사의 주장은 학연·지연·혈연으로 얽혀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 비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차. 조국 민정수석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이 위 방송 내용과 관련해, 방송을 하기 전에 김의겸 대변인에게 질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알지 못 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카. 변호인이 계속해서 “증인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김의겸 대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취재협조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김의겸 대변인에게 질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찌 다시 김의겸 대변인에게 그런 질문지를 받았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라며 오히려 반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타. 그러나 김의겸은 2019. 5. 2. 본인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우편조서에서 “질문지를 읽어보고 내용이 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조국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 내용을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파. 김의겸은 2020. 5.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도 “조국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조국 수석이 김세윤 판사를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고, 문자도 주고받은 적이 없고 아예 모르는 사이라는 취지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하.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의겸 증인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8.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을 통해,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객관적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그 헌법적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극히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서 가장 뚜렷한 징표는 「공적 인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 그리고 보도의 대상이 공적인 관심 사안인 것인 경우에 특별한 헌법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의 헌법적 명예훼손법 이론의 긍정적 수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에서 본격적으로 수용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

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시가 헌법재판소 1999. 6. 24. 결정을 참조한 것임을 이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의 심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라. 대법원은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이어받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사기준상의 차등을 주어야 하는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마. 대법원은 2003. 7. 8. 선고 2002다64834 판결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의혹의 제기에 대하여 관대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북도지사의 관사에 침범한 절도범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진실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 즉 절도범의 절도 당시 관사에 보관 중이던 미화 12만불을 함께 훔쳤다는 사실을 야당 대변인의 성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원심과 달리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민주정치 제도 하에서는 정당 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바. 이어 대법원은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에서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두터운 언론자유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또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선거법위반사건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 2002년부터 연이어 쏟아져 나온 대법원 판결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의 제기에 대하여 가급적 언론자유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거듭해서 천명했고, 이를 계기로 그 전까지 하급심에서 공직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판결들이 대법원에서 대거 파기되었습니다.

아. 그 결과, 그 후 「대전 법조비리」를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여부를 따진 대법원 판결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즉, 그 무렵 검사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들에서 원심과 달리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등).

자. 이 같은 대법원 판결들은 언론의 면책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입니다.

9. 피고인은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진실 규명을 바랍니다.

가.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운 판사,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 등 3인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난 것은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라는 게 피고인의 주장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세 사람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통화내역은 6개월 전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는 물리적 제약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에 대한 기지국 접속 기록 조회입니다. 이는 세 사람의 휴대폰이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에 청와대 부근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기지국 접속 기록 조회는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물리적 제약도 없습니다.

다. 두 번째 방법은 CC(폐쇄회로)TV 영상 확인입니다.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 중에서 민정수석비서관급이 갈 수 있는 곳은 10개 정도에 불과

하며, 통의동 우체국 뒤편의 골목과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 부근에 집중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곳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세밀히 살피면,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의 출입자 동태 파악이 가능하며, 세 사람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지국 접속 기록 조회와 CCTV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 관련자들, 즉 이해관계자들 3명에 대한 서면조사, 그것도 직접 조사가 아닌, 우편조서를 통한 간접 조사를 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입증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수사미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 2009년 1월에 발생한 용산 참사 사건에서 검찰은 진압 작전의 최종 결재권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하고, 서울청장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검찰의 이러한 수사방식은 나중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2. 결론

피고인은 이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방송한 발언의 전체 취지와 제보 내용을 방송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조국 민정수석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최강욱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하여 팟캐스트에서 발언한 내용과 이 사건의 주요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언의 모순점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끝)

첨부 서류

1.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 유튜브 방송(2017. 10. 2.~2020. 4. 26.) 의 제목들 1부

2020. 6. 5.

피고인 우종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중